

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291
------	------

2023. 12. 22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0월 11일, 아이수루 의원(찬성자 15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】

-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12.19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아이수루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큐레이터 사업은 수혜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,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종료된 사업임.
- 그러나 현행 조례의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 사항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, 조례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간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

있음.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## 2. 주요내용

가. 서울시립미술관 사업 현행화에 따라 종료된 사업을 삭제함(안 제36조제2호)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서울시립미술관은 조례를 근거로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민간에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‘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’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 범위에서 이를 삭제하기 위해 발의됨.

#### 나. ‘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’의 폐지(안 제36조제2호)

- 개정안은 ‘시민큐레이터 운영’ 사업을 지원 범위에서 삭제하고 있음.

#### 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 관장은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,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시민큐레이터 운영	<삭제>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따르면 “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 에는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은 민간 신진작가의 창작의욕 증진과 전시활동 활성화, 미술문화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‘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’ 과 ‘시민큐레이터 운영’ 사업을 조례에 반영해 2015년부터 지속해 왔음.
- 그러나 ‘시민큐레이터 운영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수혜를 누리는 시민이 제한적이고 사업의 효과성이 부진한 관계로 전액 삭감됨에 따라, 이를 사업지원 범위에서 삭제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1일  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 
문성호, 박강산, 박유진,  
박철성, 서상열, 우형찬,  
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  
전병주, 정준호, 최재란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큐레이터 사업은 수혜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,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종료된 사업임.
- 그러나 현행 조례의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 사항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, 조례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간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음.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립미술관 사업 현행화에 따라 종료된 사업을 삭제함(안 제36조제2호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 관장은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,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  략)</p> <p>2. <u>시민큐레이터 운영</u></p>	<p>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  제&gt;</u></p>

문서번호

2023101000000004

## 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아이수루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0.

회신일 : 2023.10.11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##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#### 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제2호 시민큐레이터 운영을 삭제하여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이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 맞게 개정한 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
☎ 02-2180-7954  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**